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40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정춘생 · 박은정 · 황운하
김재원 · 서왕진 · 김선민
강경숙 · 차규근 · 염태영
이해민 · 김준형 · 이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의 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